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7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이헌승·정성국·박성민

김상훈・김 건・곽규택

김소희 • 김선교 • 서지영

서범수 • 박덕흠 • 윤상현

조경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농·어업 법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재산이 농어촌뿐만 아 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시·도 교육감이 시·군·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시 · 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			
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			
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		
	<u>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